■ 선박직원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13.3.23>

## 자동화선박의 설비(제3조의2관련)

- 1. 제1종 자동화선박
  - 가. 「선박안전법」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의 기관에 관한 사항중 기관구역의 무인화설비를 구비할 것
  - 나. 다음의 설비를 구비할 것
    - 1) 선교 및 화재제어 장소에서의 소화펌프의 원격시동장치
    - 2) 물 밸러스트 적재 및 배수의 원격제어장치(자동경사제어장치가 없는 선 박 중 컨테이너 등을 하역할 때에는 특별히 선체의 경사 등을 제어할 필 요가 있는 선박에 한한다)
    - 3) 위성선위측정장치
    - 4) 자동조타장치
    - 5) 액체화물의 원격제어 하역장치(액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 하하다)
    - 6)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
    - 7) 하역용 사이드포트, 램프웨이 및 폭로갑판 강제햇치카바의 동력개폐장 치(폰톤형의 것을 제외한다)
    - 8) 주기의 운전상태의 자동기록장치
    - 9) 선수 및 선미의 계선장치의 원격제어장치
    - 10) 위성전화통신이 가능한 설비(원양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한한다)
    - 11) 제어실용 공기조화장치의 이상경보장치
- 2. 제2종 자동화선박
  - 가. 제1종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구비할 것
  - 나. 다음의 설비를 구비할 것
    - 1) 선외로부터 주기용 연료유탱크 주유관밸브의 원격제어장치(밸브의 배치 등으로 인하여 원격제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
    - 2) 주기용 연료유탱크(기관실내의 것을 제외한다)의 원격유면감시장치 및 고유면경보장치
    - 3) 냉동컨테이너 운전상태 집중감시장치(냉동컨테이너 적재선에 한한다)
    - 4) 하역호스연결용 크레인(탱커에 한한다)
    - 5) 자동갑판세정장치(석탄·철광석 또는 이들과 유사한 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 한한다)
    - 6) 선수 및 선미 계선장치의 현측 원격제어장치
    - 7) 도선사용 사다리의 동력작동장치(1인이 제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)

- 8) 비상용 예인색의 동력조작장치(인화성 고압가스 및 인화성 액체류를 산 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 한한다)
- 3. 제3종 자동화선박
  - 가. 제2종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구비할 것
  - 나. 다음의 설비를 구비할 것
    - 1) 선박지휘실·기관제어실 및 통신실이 인접하여 있고 상호통행이 용이하여 경보의 청취 및 수령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된 항해 당직관계의 집중감시 및 제어장치
    - 2) 최적자동항법보조장치
    - 3) 기관실·계류구역 기타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선내요소를 감시하는 폐 쇄회로 텔레비전 및 카메라설비
    - 4) 선박지휘실 현측에서 기관원격조정 및 원격조타장치
    - 5) 화물창빌지 고위 경보장치(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한한다)
    - 6) 모든 계류색의 드럼에 감겨 있는 1개의 드럼방식인 계류윈치
    - 7) 1인이 조작할 수 있는 예선색의 게이지 및 방출장치
    - 8) 주방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설비(주방시설의 합리적 배치와 자동접시닦이 및 건조기등을 포함한다)
    - 9)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설비

비고

제1종·제2종 또는 제3종 자동화선박의 설비기준에 미달하는 설비가 2개 이하인 경우로서 그 해당설비 대신 그에 상당하는 효과가 있는 다른 종류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해당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